

축산계열화사업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농림축산식품부	축산경영과	과 장 김종구 서기관 서재호(돼지) 사무관 김영민(가금·염소)	044-201-2331 044-201-2336 044-201-2338

I. 사업개요

1. 목적

-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·가공·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

2. 근거법령

- 축산법 제3조

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
합 계	9,200	28,410	34,410	34,410	34,410
용 자	9,200	28,410	28,410	34,410	34,410
○ 시설 및 운영비	9,200	19,410	19,410	19,410	19,410
○ 인센티브 자금	-	9,000	15,000	15,000	15,000

II.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돼지·닭·오리·염소 계열화사업자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「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로 증명을 받은 자

○ 제한사항

- 계약사육 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농가참여가 50%이하인 계열화사업자
-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계열화사업체로서 해당품목 시장 점유율이 30% 이상인 계열화사업체
- 표준계약서 미활용 계열화사업자(단, 돼지의 경우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자 제외)

○ 우선지원 요건

-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생산자단체(농·축협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포함)
- 「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모범사업자(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별도 지원)로 지정된 계열화사업자
- 산란계, 염소 등 신규 계열화사업자
- 중소규모 계열화사업자(평가 참여 사업자)
-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열화사업자

3. 지원대상

- 돼지·닭(육계, 산란계), 오리, 염소를 대상으로 완전,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 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화사업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, 가공시설, 유통시설·장비, 계열화시스템, 사육비 등 별표1에 명시된 지원대상(돼지는 인센티브 자금에 한해 지원)

5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

- 용자율·자부담율, 용자기간, 금리 등은 별표1(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 대상 및 내용) 참조
- 사업추진 기간내에 『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』에 부합하는 아래 사항을 확보해야함
 - 닭·오리 :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병아리·새끼오리를 생산·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·종오리장과 부화장(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)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계열화규모 확보에 소요되는 적정자금으로 명시적 한도제한은 없음

7. 준수 사항

- 축산계열화사업을 지원받는 계열화사업자(계열회사* 포함)는 해당 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계약사육농가의 피해, 공급 과잉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함
 - 수입이 필요한 경우 모든 계약사육농가의 동의서를 받을 것
 - 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계열회사

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1. 사업신청단계

농림축산식품부

- 사업내용, 사업대상자, 지원자격 및 요건, 지원금의 용도, 지원형태, 지원한도액 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·도에 시달 (전년도 12월말)

신청업체

-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
 - 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(일반현황, 계열농가현황 등 포함), 계열화사업자증명서, 표준계약서 사본, 농가협의회 구성·운영 현황, 자조금납부 내역서, 사업자등록증, 신용조사서 등
-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 것, 연도별 새로 갖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(신규 및 보완사업)
 - 계열화사업 완성년도, 연도별 계약사육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, 연도별 시설 설치계획,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(용자, 자부담구분)을 명시

사업주관기관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격요건,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·군·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신청
- 시·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예산신청

2. 사업자 선정단계

농림축산식품부

-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 평가는 계약사육농가협의회 구성여부 및 활성화 정도, 의무자조금 납부 실적,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조사내역, 분쟁발생 정도, 수급조절 등 협조 여부,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충족여부,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되, 시·도지사 및 관련 생산자단체장 의견 등을 참고하여 선정
- 필요한 경우 학계·업계·농협 등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회 개최(농협에서는 심사회 개최협조)
 - 다만, 심사회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사업신청자가 참석하여 설명 등 실시
-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주체인 시·도지사에게 통지

사업주관기관

-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용자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
- 사업시행주체인 시·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정·통지한 사업대상자에게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통보

<계열화사업 주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>

- 계열화사업 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계열화사업 주체의 사육·출하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액 결정

3.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

사업대상자

- 사업대상자는 시·도지사에게 통보 받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인 시·도지사에게 제출
 -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(고유 브랜드)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
 - 축산계열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술지도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하여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계획 수립
- 계열화사업 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.
 - * 다만, 시설비와 계열화사육비 간의 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 승인 필요

- 계열화사업 주체는 계약사육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하여 판매대책(자체 구매, 판매알선)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.
- 생산 위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·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 사업 형태로 전환 추진

사업주관기관

- 시·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·조정하고, 이에 따라 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·점검
 - 사업주관기관은 계약사육농가가 자발적으로 계약사육 농가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함
 - 사업주관기관은 분쟁의 조정, 계약체결, 계약사항의 이행 등을 지도

4.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

사업대상자

- 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(시·군·구 협조)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는 대출실행일 2개월 이전부터 사전 준비하여 시·군·구를 경유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지원액 범위 내에서 자금배정을 요구
 - 시설·운영자금은 시·도(시·군·구 경유)에 신청
- 대출완료시 7일 이내에 시·군·구 등 사업부서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

사업주관기관

- 신청조직의 사업진행상황 등을 사전 파악하여 대출실행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
 - 토목·건축 공사 자금집행 시 세부요령은 다음과 같으며, 경쟁 입찰(공사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)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은 투명성 있게 추진
 - * 장비·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,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
 - * 시공업체 선정·계약 시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의 지도·감독
 - *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
 - * 1개 사업이 2~5개 사업으로 분리 계약될 경우(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) 선정

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
 *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

-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로 비치하여야 함
 -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에 따름
- 대출완료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

농림축산식품부

-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출취급기관의 자금배정신청에 따라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예산에서 금리손실분(이자차액) 지원

5. 이행점검단계

사업주관기관

- 사업주관기관은 계열화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은 후(별표 2), 분기별 1회 이상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·유지하여야 함(별표 2)
-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, 불가피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출취급기관 통보
-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포기토록 유도 하고 민원해결 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

< 보고사항 및 시기 >

보고사항	보고체계	보고일	서식
◦2016 사업추진 계획	'16사업대상자 → 시·군·구 → 시·도	대상자 선정 후 1개월이내	별표2
◦2016 사업추진 실적	'16사업대상자 → 시·군·구 → 시·도 (상·하반기 연 2회 농식품부에 보고)	매분기 익월5일까지	"
◦계열화사업 지정업체 운영실태	시·도→농식품부	1월 말까지	별표3

농림축산식품부

-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열화사업 주체를 중심으로 축산계열화 지원자금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
-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, 사업추진정도, 사후관리사항 등

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, 계획 등에 반영 추진

○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

- 대상조직 :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계열화사업자
 - 점검일정 : 연 1회 이상(사업추진 일정 고려하여 점검)
 - 점검반 : 농림축산식품부(주관), 시도 및 시군구 사업담당자 합동 현지방문 점검
- <점검항목>
-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현황, 자금집행의 적정성, 관리현황 등
 - 사업실적 :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

<제재 및 처벌내용>

-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추진결과를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(추진 중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이상 점검)
-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

6. 사후관리단계

- 사업주관기관은 '91년 이후 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매년말을 기준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익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(별표3)
-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·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
- 기본규정 제67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·설비·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 정보시스템(AGRIX)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·관리

7.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

- 동 사업 추진 시 점검·평가 등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후 지침 개정 시 반영

IV.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1.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

-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 감안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사업 추진

2.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
-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고

<별표1>

축산계열화사업 자금지원 대상 및 내용

구 분	지 원 범 위	지 원 조 건	비 고
1. 계열화사업 주체 사육시설	○ 계열화사업 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(종축장, 부화장) - 사무실,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	- 사업비의 70% 이내 - 연리2~3%(영농법인 등 2% 농·축협·일반기업 3%) *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- 3년거치 7년균분 상환	
2. 가공시설(육가공 공장, 난가공장, 계란집하장 등)	○ 「도축·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」 사업과 동일 * 도계(압)장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관련 생산자 단체장의 추천	"	
3. 유통시설	○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· 시설·장비 등	"	
4. 축산계열화 시스템 구축(ICT 융복합 지원)	○ 사료·육종·사육·도축·가공관리 등 계열화시스템 구축 지원 ○ RFID/USN을 활용한 축산농 가 사육환경, 급이, 선별 등 사육관리 지원 ○ RFID를 활용한 생산·유통·판 매이력 관리 시스템 지원	"	
5. 계열화사육비	○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화사업 주체 등 ○ 자축구입비, 사료비, 약품비, 위탁사육수수료 등	- 총사업비의 50%이내 - 연리2~3%(영농법인 등 2% 농·축협·일반기업 3%) *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- 2년이내 상환	
6. 인센티브 자금 (운영자금)	○ 자축구입비, 사료비, 약품비, 위탁사육수수료 등	- 연리 0~1% - 2년이내 상환	*별도지침 시달

※ 사료제조시설,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

<별표2>

계열화사업 추진(계획, 실적) 보고

1. 현 황

- 지정년도 :
- 축 종 :
- 상 호 :
- 대표자성명 :
- 주 소 :

2. 사업장 건설(계획, 실적)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량	완료 예정일	총투자계획			'16년 계획			'15년 실적			
			합계	용자	자담	합계	용자	자담	합계	용자	자담	진척도 (%)
계열농가생산시설												
축분처리시설												
도축장												
육가공공장												
계란집하장												
판 매 장												
저장시설												

- 주) ○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사업명을 선택하여 기재
 ○ 계열주체 사육시설란의 ()에는 「별표1」 지원범위를 선택 기재

3. 계열화사업 추진(계획, 실적)

구 분		'16년 계획		실 적			
				상반기		하반기	
		사업량	금액	사업량	금액	사업량	금액
계열농가 확 보	호 수						
	총사육규모						
자재공급	자 축						
	사 료						
생 산	계열생산						
	외부구매						
	기 타						
	도 축 량						
판 매	자체유통						
	상인유통						
	기 타						
	수 출						
	합 계						

* 농가협의회 활성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

<별표3>

계열화 지정업체 운영실태

상 호							지정 연도	
대표자							전화 팩스	
주 소								
직영·위탁·계약 농가 상시사육	원종계		종계		실용계		계	
	두(천수)							
계열농가에 종계 공급 (연간)	직영·계열 자체생산(A)		계열업체가 공동구매·공급 (OEM 등)		계열농가가 개별구입		계(B)	자체공급율 (A/B)
	천수							%
생 산 (연간)	구 분	직영 (C)	위탁 (D)	계 약	일반 구매	계 (E)	자체생산율 (C+D)/E	
	호수(호)							
	마릿수(마리)							
사료공급 (연간)	직영·계열업체 생산(F)		공동구매 (OEM 등)		농가 개별구입		계(G)	자체공급율 (F/G)
	톤							%
도 축 (연간)	자체시설(H)		외부위탁		계(I)		자체도축율 (H/I)	
	천수				* 생산두수(E)와 같아 야 함		%	
판 매 (연간)	자체유통 (J)	상인유통	수 출 (K)	2차가공 (L)	기 타	계(M)	자체판매율 (J+K+L/M)	
	톤						%	
향후 계획	연도	계열 농가수	생산량	자체생산율	자 체 사료생산율	자체시설 도축율	자체 판매율	
	2017년	호	마리/년	%	%	%	%	
	2018년							
	2019년							

* 직영 : 계열업체가 자축 및 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직접생산하는 경우

* 위탁 : 계열업체가 자축소유, 농가에 위탁사육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

* 계약 : 농가가 자축소유, 계열업체와 농가간 일정물량 공급계약 체결하는 경우

주요변경 사항

구 분	현 행(2015)	변 경(2016)	변경 사유
1. 사업대상자	○ 닭·오리·염소 계 열화사업자	○ 돼지·닭·오리·염소 계열화사업자	○ 돼지 추가
Ⅲ. 표준프로세스 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. 사업신청단계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5px auto;">신청업체</div>	○ 지원을 받고자 하 는 계열화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주사업장 소 재지의 시장·군수· 구청장에게 신청 <추 가>	○ 지원을 받고자 하 는 계열화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주사업장 소 재지의 시장·군수· 구청장에게 신청 - 제출서류 : 사업계 획서(일반현황, 계 열농가현황 등 포 함), 계열화사업자 증명서, 표준계약 서 사본, 농가협의 회 구성·운영 현 황, 자조금납부 내 역서, 사업자등록 증, 신용조사서 등	○ 신청업체 제출서류 구체화
Ⅲ. 표준프로세스 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. 사업자선정단계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5px auto;">사업주관기관</div>	○ <신 설>	○ 기본규정 제28조 제8항 각 호에 따 른 용자사업 결격 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 제한기간 중에 있 는 사업자는 선정 단계에서 제외	○ 정책자금 부적격자 에 지원제한 강화

구 분	현 행(2015)	변 경(2016)	변경 사유
<p>Ⅲ. 표준프로세스 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</p> <p>6. 사후관리단계</p>	<p>○<신 설></p>	<p>○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·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</p> <p>○기본규정 제67조 제2항에 의거 시·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·설비·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 (AGRIX)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·관리</p>	<p>○사업주관기관의 사후관리 역할 강화 및 절차 간소화</p> <p>○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</p>

‘16년도 축산계열화사업 인센티브자금 지원계획

- ❖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(‘13.2.23)에 따라 모범사업자 육성 등 계열화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
- ❖ 농가협의회 운영 활성화, 사전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정책 사업 협조 계열화사업자 등 모범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
 - * 모범사업자 지정현황(6개소) : (육계) 체리부로, 한강씨엠, 목우촌, 하림, 올품 (오리) 유성농산
- ❖ 수급안정사업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계열화사업자

1. 지원계획

- 지원규모 : 150억원(육계·오리 90억원, 돼지 60억원)
- 지원대상
 - (육계·오리) 축산계열화사업 모범사업자(‘16년도 지정업체)
 - (돼지) 수급안정 사업에 참여한 계열화사업자
- 재원 : 농특회계 이차보전사업(축산계열화사업 중 인센티브 자금)
- 지원조건 : 0~1%, 상환기간 2년
- 자금용도 : 자축구입비, 사료비, 위탁사육수수료 등 운영자금
- 지원한도 : (육계) 30억원, (오리) 20억원, (돼지) 20억원
 - 개소당 지원 한도 범위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
- 평가방법
 - (육계·오리) 농가협의회 활성화 정도,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조사결과 반영, 계열농가 교육실적, 방역프로그램 추진현황, 자조금 납부 실적 및 수급조절 협조 여부 등을 감안하여 평가 실시
 - (돼지)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뒷다리살 장기공급계약,

등급제 탕박 정산 전환, 지급을 인하, 소비 홍보 등에 참여 여부 등을 감안하여 평가 실시

2. 추진계획

- 시·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계획 홍보('16.1)
 - 모범사업자(육계·오리)는 현재 신청접수 중으로 향후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지원
-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(시·군·구→시·도)에게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자금 신청
 - 제출서류(최근 1년간 자료) : 농가협의회 활동 실적, 자조금 납부실적, 계열농가 교육실적, 수급조절 관련 자료, 공급계약서, 소비홍보 자료 등
- 시·도지사는 사업신청자에 대한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준수여부,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내역, 수급안정 참여(돼지) 등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에 자금 신청
- 농식품부장은 계열화사업자별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자금 배정 등 조치
 - 축종별 지원한도 내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(0~1%) 및 지원금액 등 차등지원

3. 기타사항

- 관할 지자체장은 모범사업자가 인센티브자금 신청 누락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 홍보
- 사업대상자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지원 자금을 사용시 자금 회수 등 조치